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77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 : 윤준병 • 박희승 • 임호선

이병진 • 서영교 • 이춘석

김유덕 • 허종식 • 한병도

이재관 · 정동영 · 이정헌

이상식 • 한창민 의원

(1491)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인구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시작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유학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촌유학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학구 조정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기능대학·산업교육기관 등을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 기관으로 우선하여 선정하며, 해당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2항 신설).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노후화된 빈집에 대하여 시장·군수 등이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에 대한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진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 라.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함(안 제24조제4항신설).
- 마. 산림청장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

- 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5항 신설).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내항여객선 및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의 선박을 이용하는 섬 주민 및 섬 주민 차량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제7항).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고 도선장 설치가 긴급히 필요한 소외도서지역의 경우에는 도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선장에 적합한 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8항).
- 아.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작은 도서관 등록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제25조제1항).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 차.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문화·체육시설 등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 폐율과 용적률을 1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 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

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지원에 있어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초기 중견기업(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한함)을 포함함(안 제28조제2호).

법률 제 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농어촌유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이 의의 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면서 생태전환적 교육 및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상호 협력 문화를 배우는 활동(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유학"이라 한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농 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유학지 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유학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 배정에 있어 거주 지역 외의 학교로 배정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농어촌유학 지원 및 학교 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다음 각 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대학 등을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을 말한다)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기능대학
-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서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기관

제24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매각할"을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내항여객선을"을

"내항여객선 및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 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노후화된 빈집에 대하여 시장·군수 등이 철거하는 경우해당 빈집에 대한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진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⑤ 산림청장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신고 절차 및 기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인 도서(島嶼)로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고 해당 도서에 도선장 설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항로 개설을위한 도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2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

-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등록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25조의2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2(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인구감소지역 내에 의료기관 및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등 의료·문화·체육시설 등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27조의2(폐교재산의 무상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폐교재산을 같은 법 제2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로 직접 활용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그 대부기간

을 1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28조제2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연간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빈집 철거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철거하는 빈집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유학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유학 지원 조직을 운영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을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농어촌유학 지원센터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2(농어촌유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
	소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의 학교
	에 재학하면서 생태전환적 교
	육 및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상
	호 협력 문화를 배우는 활동
	(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유학"
	이라 한다)이 제공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
	<u> </u>
	하여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
	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
	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
	<u>촌유학지원센터를</u> 설치·운영
	<u>할 수 있다.</u>
	④ 교육감은 「초·중등교육
	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유학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 배정에

① (생략) <신 설>

- 있어 거주 지역 외의 학교로 배정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농 어촌유학 지원 및 학교 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 례로 정한다.
-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 ~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 ~ (Î) (현행과 같음)
 -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 구감소지역 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 는 대학 등을 외국인유학생 일 학습병행(「산업현장 일학습병 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을 말한다)을 담당 하는 운영기관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 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 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원 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① (생략)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법」 제2조제5호의 기능대학
-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 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준하는 시설 또는 기관 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기 관

① (현행 제12항과 같음)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농 어촌정비법 . 제65조의5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노후 화된 빈집에 대하여 시장・군 수 등이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에 대한 보상비에서 철거 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진하여 철 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 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u>매각할</u>수 있다.

<신 설>

④ (생 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에도 불 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⑤ 산림청장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사람에게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허가・신고 절차 및기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 <u>⑦</u> -----

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해운법」에 따 른 <u>내항여객선을</u> 이용하는 섬 주민 및 섬 주민 차량에 대하 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⑥</u> (생 략)

<신 설>

제25조(문화기반의 확충) ① 인구 제 감소지역에서는 「건축법」 제 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 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u>내항여객선 및 내항 화물운</u>
송사업자의 선박을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
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인 도서(島嶼)로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고 해당 도서에 도선
장 설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에는 신규항로 개설을 위한 도
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장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u>⑨</u> (현행 제6항과 같음)
25조(문화기반의 확충) ①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④ (생 략) <신 설>

<u>⑤</u> (생 략) <신 설> ----. 이 경우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 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등록 요건을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 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5조의2(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인구감소지역 내에 의료기관 및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등 의료·문화·체육시설 등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

<신 설>

용할 수 있다.

제27조의2(폐교재산의 무상 대여)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폐교재산을
 같은 법 제2조제3호부터 제8호
 까지의 시설로 직접 활용하려
 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그 대 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 으며,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 과할 수 없다.
- ①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28조(산	업단지	에 대	한 ス]원)	국
가와 ス] 방자치	[단체	는 인]구감	소
지역 내	l 산업	단지어] 대	하여	지
역산업	과 연기	계한 부	특화	산업	단
지의 조	성과	근로ス	ㅏ 유·	입을	통
한 산약	は단지	활력	증진	등 등	을
위하여	다음	각 3	호의	사항	에
대한	행정적	• 재정	정적	지원	을
할 수 9	있다.				

- 1. (생략)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 기업에 임대하는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3. ~ 5. (생 략)

세28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
·.
1. (현행과 같음)
2
중소
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연
간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
만인 기업에 한정한다)
3. ~ 5. (현행과 같음)